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71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김영식

권명호 · 정운천 · 태영호

김성원 · 이종성 · 박성민

엄태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종합계획 및 시·도 주거종 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.

또한 국토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·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주택 공급·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,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·관리계획은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 항). 법률 제 호

#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광역시장·도지사"를 "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공주택 공급·관리계획)	제3조(공공주택 공급・관리계획)
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	①
· <u>광역시장·도지사</u> 또는 특별	<u>광</u> 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	도지사
라 한다)는 「주거기본법」 제	
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	
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·도	
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	
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	
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